##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73

발의연월일: 2021. 2. 26.

발 의 자:이종성・박성중・김영식

이종배 · 성일종 · 박덕흠

정운천 · 김형동 · 권성동

박대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신고 숙박업소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숙박업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법률 제 호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 호 중 "신고"를 "신고(숙박업의 신고를 제외한다)"로 한다.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벌칙) <u>&lt;신 설&gt;</u>	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②</u>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1
의한 <u>신고</u> 를 하지 아니한 자	<u>신</u> 고(숙박업의 신고를 제
	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②</u> · <u>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